
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(약칭: 데이터산업법 시행령)

[시행 2023. 1. 3.] [대통령령 제33195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데이터진흥과) 044-202-6291

- 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1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
 - 2.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
 - ③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
 - 3.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**제4조(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)**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(이하 "데이터정책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제5조(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)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 - ③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6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·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 -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- **제7조(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)**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제8조(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)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(이하 이 조에서 "사무국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,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.
 -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・감독한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(데이터의 생산 활성화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·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.
- 제10조(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관련 제도의 마련, 투자의 확대 방안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- 2.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사업의 시행과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
 - 3.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・공유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- 제11조(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・운영할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2조(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·운영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(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)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(이하 "데이터안심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・물리적・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
 - 2. 데이터 분석·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
 -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
 - 1.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
 - 2.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, 단체 또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.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 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
 - 3.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- 제13조(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)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 · 물리적 · 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·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
 - 2. 보안책임자의 지정,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
 - 3. 데이터에 접근 변경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데이터의 유출・훼손・파괴・위조・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제14조(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(이하 "가치평가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.
 -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
 - 2.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
 - 3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
 - 4.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・관리・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
 -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정관
- 2. 사업계획서
- 3. 제1항제1호・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4.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
- 3.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- **제15조(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)**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 -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 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.
- **제16조(가치평가 정보의 통보)** 법 제14조제6항에서 "경영・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- 1.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국가 안보ㆍ경제나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- **제17조(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)** 법 제1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대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)을 말한다.
- 제18조(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, 상담 및 자문 응대
 - 2.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 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
 - 3.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- 4.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
 - 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.
- 제19조(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데이터유통시스템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・운영해야 한다.
 - 1. 데이터 유통ㆍ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
 - 2.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보받은 가치평가 정보의 관리
 - 3.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데이터사업자 관련 정보의 관리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지원
- 5. 법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
- 6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)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0조(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데이터 플랫폼(이하 "데이터플랫폼"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데이터의 수집・가공・분석・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・운영 지원
 - 2. 데이터의 수집・가공・분석・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 - 3.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
 - 4.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
 - 2. 데이터의 수집・가공・분석・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・기술적 실현 가능성
 - 3. 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
 - 4. 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・가공・분석・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20조의2(데이터 품질관리 사업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
 - 2.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
 - 3.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
 - 4. 데이터 품질진단
 - 5.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
 - 6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[본조신설 2023. 1. 3.]
- 제20조의3(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
 - 2.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
 - 3.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・관리・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
 -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정관
 - 2.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
 - 3.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(이하 "데이터 품질인증기관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
- 3.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- 4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

[본조신설 2023. 1. 3.]

- **제20조의4(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)**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 -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. 3.]

제20조의5(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)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데이터의 내용
- 2. 데이터의 구조
- 3. 데이터의 관리체계
- 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- 1. 데이터 내용: 완전성, 유효성 및 정확성
- 2. 데이터 구조: 일관성
- 3. 데이터 관리체계: 유용성 및 접근성
- 4.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-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. 3.]

- **제21조(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)**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(이하 "데이터거래사"라 한다)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2.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
- **제22조(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)** 법 제2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.
 - 1.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(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일 것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(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일 것
- 3.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(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일 것
- 4.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(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일 것
- 5.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

제23조(데이터거래사 교육)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"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.

- 1. 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요 탐색・발굴 및 시장 조사・분석 교육
- 2. 데이터 가공,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
- 3.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
- 4.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
- 5.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・자문・지도, 중개・알선, 데이터 이전・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24조(창업 등의 지원)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
- 2. 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, 회계,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
- 3.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, 창업자의 발굴・육성・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
- 4.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

제25조(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"전문인력양성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 <개정 2023. 1. 3.>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
 - 나.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
 - 다.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
 - 라. 다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
 - 1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2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
 - 마.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
- 2. 교육 인력ㆍ시설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
-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1. 정관
- 2. 교육 인력 · 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
-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
-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
- 5.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강의료와 수당
- 2. 교육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관련 비용
- 3. 실습비용
- 4. 그 밖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
- 3.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- 4.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
- **제26조(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)**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실적
 - 2.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 직무별 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 공급 현황
 - 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, 서면조사,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.
 -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·실태에 관한 조사·분석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제27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국가안보, 재난의 예방·대응,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등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28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.
 - 1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 - 2.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
 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다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 - 라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3. 1. 3.>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
- 2. 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
- 3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
- 4. 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
- 5.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
- 5의2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
- 5의3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
- 6.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
- 7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
- 8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
- 9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
- 10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
- 11.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
- 12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
-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- 1.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
- 2. 업무수행의 실적 및 내용
- 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9조(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) ① 데이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회(이하 이 조에서 "데이터사업자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

- ② 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데이터산업에 관한 홍보활동
- 2. 데이터 관련 기술의 교육훈련 및 동향 조사와 신기술 보급활동
- 3. 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
- 4.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의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
- 5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6. 그 밖에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-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사무소의 소재지
- 4.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5. 회원의 자격, 가입・탈퇴, 권리・의무에 관한 사항
- 6. 임원에 관한 사항
- 7. 회비에 관한 사항
- 8. 총회에 관한 사항
- 9. 재정・회계에 관한 사항
-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1.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
- 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의 접수
- 3.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
- 4.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
- 5.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 시해야 한다.
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30조(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)**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・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- **제31조(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(이하 "조정부"라 한다)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수 있다.
- 제32조(분쟁의 조정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·조정 할 수 있으며, 해당 사건을 분리·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 -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,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.
- 제33조(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)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**제34조(조정비용)**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.
- 제35조(수당과 여비)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제36조(분쟁조정 세칙)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37조(청문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 - 1.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
- 3.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
- **제38조(권한의 위임)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
- 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)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,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법 제35조,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4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3. 1. 3.]

부칙 <제33195호,2023. 1. 3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